

2022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2년 7월 26일(화), 13:30

2. 장 소 : 화도관 대회의실

3. 대학평의위원회(11명)

■ 참석의원 : 김진곤(의장), 천성오(부의장), 이건영, 박수원, 신상진, 김태훈(6명)

■ 원격(ZOOM) 참석의원 : 이경훈, 전시찬(2명)

■ 불참의원 : 박민태, 김민수, 고민석(3명)

4. 안 건

가. 심의 : 규정 개정(안)

안 건		상정부서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대학원

나. 보고 : 규정 개정/제정/폐지(안)

안 건		상정부서
2.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인권센터
3.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폐지(안)	
4.	성 인권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안)	
5.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폐지(안)	
6.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교수지원팀
7.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8.	체육부 운영 규정 개정(안)	체육지원팀
9.	직원승진 규정 개정(안)	총무팀
10.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11.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12.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개정(안)	산학협력단
13.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평가감사팀
14.	공간관리 규정 개정(안)	기획예산팀
15.	공간위원회 규정 개정(안)	
16.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개정(안)	대학혁신사업단

5.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

- 김진곤 의장이 성원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다.
 - 총원 11명 중 6명 회의장 참석, 2명 원격(ZOOM) 참석

【심의 : 규정 개정(안)】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대학원 교학부장과 대학원 교학팀 담당과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2022학년도 제2차 대학원위원회 의결사항 적용
 -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2023학년도 입학정원 확정
: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2023학년도 입학정원은 전년도(2022학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 주요 내용
 -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 [별표1], [별표2], [별표3] 개정
 - 박수원 의원이 공학계열의 '인공지능응용학과' 신설(2021.02.03.) 심의 시 학과 간협동과정의 '인공지능융합학과' 명칭과 비슷한 부분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있었으며, 그 당시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융합학과'의 경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언급하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별표1] 개정(안)에서 인공지능융합학과의 신입생 모집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인공지능융합학과'의 경우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사업을 위해 만든 학과이며, 해당 사업 신청 등 학생 모집 가능성을 감안하여 학과는 존치시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학원에 확인을 요청하다.
 - 대학원 교학부장이 규정상 학과간협동과정은 4년간 3명 이상 입학하지 않을 경우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공지능융합학과'의 경우 현재는 존치시키되 추후 폐지기준이 되었을 때 평가위원회를 통해 폐지수순 진행이 가능할 것임을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이 비슷한 학과 명칭으로 인하여 신입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모집 공고 시 정확하게 구분하여 안내할 필요성을 언급하다. 이에, 대학원 교학부장이 정보융합학부장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협의하겠다고 답변하다.
 - 김진곤 의장이 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비슷한 학과 명칭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모집 공고 시 정확하게 구분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정리하다.
 - 의결내용 : 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비슷한 학과 명칭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모집 공고 시 정확하게 구분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하다.

【보고 : 규정 개정/제정/폐지(안)】

2)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 인권센터장이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이 재상정된 배경 및 제정사유와 주요내용, 인권센터의 조직과 산하 위원회 구성(안)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 제정 사유
 - 본교에 인권센터 직제가 신설(2022. 4. 18)됨
 - 이에, 인권센터 및 인권센터 산하 각 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또한, 본교 구성원 인권 침해행위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 제2장 인권센터
 - 제3장 인권·성평등상담실
 - 제4장 학생상담실
 - 제5장 장애학생지원실
 - 제6장 보칙
- 박수원 의원이 위원회 중 「상담·장애지원위원회」 명칭은 정확한 표현을 위해 「상담·장애학생지원위원회」로 변경되어야 함을 언급하다.

「상담·장애지원위원회」 → 「상담·장애학생지원위원회」 : 위원회 명칭 변경

- 인권센터장이 제17조(직권조사)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대학평의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묻다.
 - 【기획관리위원회 의견】 제17조(직권조사) ①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이에, 박수원 의원이 사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실장의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되, 실장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는 방법을 제시하다.
 - 김진곤 의장이 사건의 시급성, 정보 공유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제17조(직권조사) ①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실장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이건영 의원이 제8조(위원회 소집·의결)와 관련하여, 인권·성평등위원회 안건의 중요성 및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기준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이에, 인권센터장이 현실적인 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천성오 의원도 취지는 동의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다.
- 박수원 의원이 위원회별로 의결기준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 신상진 의원이 회의 개최(출석) 기준을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하다.
- 김진곤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제8조(위원회 소집·의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인권·성평등위원회의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박수원 의원이 제23조(재심청구)와 관련하여, 제②항 2호 "사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증거" 또는 "증인"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다.

▪ 김진곤 의장이 제23조(재심청구)와 관련하여, 재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기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함을 언급하고, 제8조 인권·성평등위원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다.

▪ 김진곤 의장이 제23조(재심청구)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제23조(재심청구) ② 재심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시한다.
1.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조사과정 중 검토하지 못한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
④ 재심을 위한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3)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폐지(안)

- 인권센터장이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폐지 사유

- 본교에 인권센터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인권센터 및 인권센터 산하 각 실 (인권·성평등상담실, 학생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함
- '인권센터 운영 규정'에 기존의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내용을 통합하고자 폐지함
- 주요 내용
 -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폐지
- 의원 전원이 폐지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4) 성 인권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안)

- 인권센터장이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폐지 사유
 - 본교에 인권센터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인권센터 및 인권센터 산하 각 실 (인권·성평등상담실, 학생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함
 - '인권센터 운영 규정'에 기존의 '성 인권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내용을 통합하고자 폐지함
- 주요 내용
 - 「성 인권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
- 의원 전원이 폐지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5)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폐지(안)

- 인권센터장이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폐지 사유
 - 본교에 인권센터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인권센터 및 인권센터 산하 각 실 (인권·성평등상담실, 학생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함
 - '인권센터 운영 규정'에 기존의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내용을 통합하고자 폐지함
- 주요 내용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폐지
- 의원 전원이 폐지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6)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2023학년도 전반기부터 임용되는 특별전임교원에 대한 복무기준을 신설하여 특별전임교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원 선발
 - 기존 특별전임교원을 포함하는 전면 적용이 아닌 각 학(부)과와 (특수)대학원에서 특별전임교원 충원 목적에 맞게 트랙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여 운영의 탄력성 확보
 - 본교 타 규정에는 전체적으로 “이공계열”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공계열에는 자연계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공·자연계열”→“이공계열”로 통일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특별전임교원 교육트랙과 연구트랙을 (A), (B)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
 - 기존 특별전임교원은 (A)유형을 현행대로 적용하고, 2023학년도 전반기 특별전임교원부터는 (A), (B) 유형을 선택 가능하도록 함
 - “이공·자연계열”→“이공계열”

▪ 이건영 의원이 연구트랙 교원(B유형)의 경우 주당 3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 대해 질의하고, 교무처장이 주당 3시간이 책임시수이며 3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초과강사료를 지급함을 설명하다.

▪ 이건영 의원이 교육트랙 교원(B유형)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가 비용절감 정책의 일환인지 질의하고, 교무처장이 연구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는 만큼 강의를 많이 하는 교원을 임용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이건영 의원이 특별전임교원 대상 의견 청취 여부를 질의하고, 현재 특별전임교원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다. 특히, 연구트랙 교원(B유형)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초과강의를 맡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박수원 의원도 이에 동의하며 제도 신설 취지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다.

▪ 교무처장이 특별전임교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할 부분이며, 특별전임교원 트랙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각 학과(부)와 (특수)대학원의 충원 목적에 맞게 트랙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여 운영의 탄력성 확보와 유연한 제도 운영 취지로 생각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이 신분전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특별전임교원 트랙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김진곤 의장이 연구트랙 교원(B유형)의 경우에만 초과강의를 못하게 하는 방법 또는 최대학점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다.

- 이건영 의원이 교원 제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교수평의회 및 구성원 의견수렴, 설명회 등이 없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며,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논의 할 것을 요청하다.

- 교무처장이 구성원 의견수렴 후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구성원 의견수렴 후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하다.

7)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2023학년도부터 이공계열 외국인특별전임은 연구역량이 우수한 교원을 충원할 예정임

- 이에 따라 2023학년도 전반기부터 임용되는 이공계열 외국인특별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이공계열 외국인특별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기준 추가

- 의결내용 : 「(6)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하여 본 안건 또한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하다.

8) 체육부 운영 규정 개정(안)

- 학생처 체육지원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직제 규정 개정에 따라, 부서 명칭이 변경됨. 이에, '체육부 운영 규정'을 직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규정명 변경 : 체육부 운영 규정 → 운동부 운영 규정

-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체육부장 인사발령(면직) 사항 반영

- 미운영 운동부 삭제 : 골프부, 빙상부

- 기타 자구 변경 등

- 박수원 의원이 본교에 운동부가 있고 운동부 운영 규정으로 규정명칭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서 직제명이 체육지원팀보다 운동지원팀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이에, 김진곤 의장이 추후 직제 개편 시 부서 직제명을 검토해 볼 것을 체육지원팀장에게 요청하다.

- 박수원 의원이 제10조(체육지원팀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1호와 4호의 경우 체육지원팀장이 아닌 운동부 감독과 코치의 임무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이에, 체육지원팀장이 현장에서는 감독과 코치가 임무를 맡고, 1호와 4호와 관련된 행정처리 업무는 체육지원팀장이 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김태훈 의원도 박수원 의원 의견에 동의하고, 체육지원팀장이 체육지원팀장과 감독·코치의 임무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다.

- 박수원 의원이 제11조(감독, 코치의 임무)와 관련하여, 7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제11조(감독, 코치의 임무) 각 감독, 코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7. 기타 학생처장이 위임하는 사항

- 이건영 의원이 제5조(체육부장)와 관련하여, 체육부장 보직이 삭제되었으므로 전체 삭제 표기해야 함을 언급하고 김진곤 의장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다.

제5조 <삭제 2022. 08. 23.>

- 박수원 의원이 [별지서식 2호 서약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원정훈련 또는 원정경기에서 기타 숙소에서의 무단이탈 가능성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서 약 서>
3. 운동부 기숙사 또는 지정 숙소 무단이탈자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며, 체육지원팀의 직제명칭, 체육지원팀장과 감독·코치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검토하기로 하다.

9) 직원승진 규정 개정(안)

- 총무처 총무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내 광운대학교 일반직원의 직급 명칭이 삭제(개정일 : 2022.04.18.)됨에 따라 대학 내 유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대졸자 기준 기산호봉 변경(32호봉→38호봉) 및 직원 경력환산율 변경으로 승진 최저 소요년한 표내 기준 호봉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별표1] 개정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0)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 총무처 총무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내 광운대학교 일반직원의 직급 명칭이 삭제(개정일 : 2022.04.18.)됨에 따라 대학 내 유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별표1] 개정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1)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 총무처 총무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직제 신설 및 보직 신설에 따라 책정된 직무수당을 반영
- 주요 내용
 - 제26조(직무수당) 관련 [별표6] 개정 및 개정완료 후 직무수당 소급적용 설명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2)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개정(안)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결과에 따른 미흡사항 보완 조치
 - 신분별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현실화
- 주요 내용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적용범위 및 문구 명확화
 - 연구참여확약의 체결 및 변경 주체 수정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상향 조정
 -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을 위한 기관 역할 추가
 -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구체적 명시

- 박수원 의원이 제2조(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의 학생 연구자는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박수원 의원이 제23조(위반 시 조치)와 관련하여, 정확한 의미전달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이에, 기획처장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가이드라인을 인용하였음을 설명하다.
 - 김진곤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제23조(위반 시 조치) ③ 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13)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 기획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해당 지표(요소)의 개선이 필요하여 대학평의위원회 평의원 구성에 조교를 포함하고자 함
 - 관련법령(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 평의원 구성에 조교를 포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4조(구성 및 위촉) 조교 추가 및 조교위촉과정 추가
 - 제5조(자격) 조교 자격기준 및 상실기준 추가
- 박수원 의원이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의미와 본교 조교의 의미가 정확하게는 일치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본교 교육조교의 경우 임용기간이 짧아 조교 평의원이 자주 변경될 수 있음을 우려하다.
 - 이건영 의원이 제4조(구성 및 위촉) ②항과 관련, 구성단위별 대표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추천한 자가 위촉되도

록 되어 있는데, 조교 인사부서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이에, 박수원 의원이 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제시하다.
- 기획처장이 일반대학원의 경우 원우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답하고, 김태훈 의원(일반대학원 근무)이 현재 원우회 구성 준비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임을 설명하다.
- 김진곤 의장이 규정 내용 및 향후 원우회 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제4조(구성 및 위촉) ② 법인 정관에 정한 구성단위별 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3. 조교 대표 1명은 대학원생을 대표하는 집단에 의하여 추천하되, 일정기간 동안 추천이 없는 경우 조교 인사부서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14) 공간관리 규정 개정(안)

- 기획처 기획예산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2022학년도 제2차 공간위원회 의결사항 적용
 - 공간 배정 및 회수 등 관리부서의 역할 확대를 통한 공간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
 - 주요 내용
 - 주관부서와 관리부서의 역할 및 기능 등에 대한 정비
 - 공간사용료 미납 또는 체납 시 후속조치 추가
 - [별표1], [별표2], [서식1] 개정
 - 박수원 의원이 제2조(용어의 정의)와 제7조(공간주관부서 및 관리부서) 관련하여, 주관부서 정의가 중복되어 있음을 언급하다. 또한,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업무 특성상 주관부서와 관리부서 정의순서가 변경되어야 함을 언급하다.
-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제2조(용어의 정의)

3. 주관부서 (3호와 4호 순서 변경)

4. 관리부서 (3호와 4호 순서 변경)

-제7조(공간주관부서 및 관리부서)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15) 공간위원회 규정 개정(안)

- 기획처 기획예산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2022학년도 제2차 공간위원회 의결사항 적용
 - 공간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공간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 공간위원회 규정 제5조(회의)
- 김진곤 의장이 제5조(회의) ②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야 함을 언급하다.

-제5조(회의)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박수원 의원이 제3조(구성)과 관련하여, ③항의 단서조항과 ④항의 내용은 제5조(회의)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임을 언급하다.
 - 기획처장이 ③항의 단서조항 내용과 ④항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④항은 삭제하고, ③항의 단서조항을 제5조(회의)로 이동하는 것을 제안하다.
 - 김진곤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제3조(구성) ③ 위원은 당연직 8인(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관리처장, 정보통신처장, 산학협력단장, 기획예산팀장)과 전임교원 중 3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의 ③항으로 이동)

~~④ 관리부서에서 안건을 상정한 경우 해당 관리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삭제)~~

④ 당연직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 시 보충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③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16)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개정(안)

- 기획처 대학혁신사업단 운영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22~'24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중, 「대학 내 자원(자체·정부지원)에 대한 총괄 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강화」 내용을 준용하여,

광운혁신사업위원회 위원에 재학생을 필수로 포함하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광운혁신사업위원회 위원에 재학생 포함

- 박수원 의원이 구성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광운혁신사업위원회 구성에 직원이 포함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다.

- 기획처장이 위원회 구성 품의 등 운영 시 대학혁신사업단 운영팀장을 위원이면서 간사의 역할을 하도록 함을 설명하다.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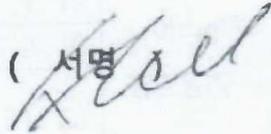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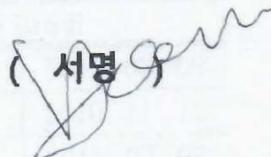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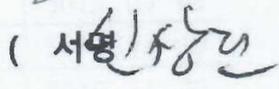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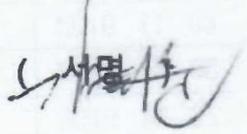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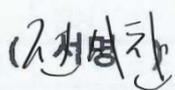
6. 폐회

의장이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친 후 폐회를 선언하다.

붙 임 : 회의자료 1부. 끝.

2022년 7월 26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 장	김 진 곤	
부 의 장	천 성 오	(서명) 
평 의 원	이 건 영	(서명) 
평 의 원	박 수 원	(서명) 
평 의 원	이 경 훈	(서명) 
평 의 원	신 상 진	(서명) 
평 의 원	김 태 훈	(서명) 
평 의 원	박 민 태	(서명)
평 의 원	전 시 찬	(서명) 
평 의 원	김 민 수	(서명)
평 의 원	고 민 석	(서명)